9·30…1차 등록대상은 선학원 대각회…10여 곳

■ 법인 특성에 따른 종단등록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소속감을 높이고 전법 교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제1차 법인 등록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은 사찰보유법인과 사찰 자체가 법인인 사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에 법인을 등록해야 한다.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면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문장을 사용할 수 있고,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법인 산하 사찰에서 종단 신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종단 및 사찰의 행정지원을 받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련의 절차를 밟지 않아 미등록법인으로 분류되면 법인과 관련된 임직원과 도제는 종헌·종법·종령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도제양성 등 각종 권리를 제한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찰 및 사찰보유법인 9월30일까지

현재 총무원에서 파악한 법인관리법 적용 법인은 200여 곳으로 앞으로 현황파악을 통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동국대 등 종립학교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는 학교법인을 제외한 종단의 사찰, 스님, 중앙종무기관이 설립한 영리·비영리 법인은 모두 해당된다. 이 가운데 1차 등록을 마쳐야 하는 법인은 사찰보유법인으로 분류된 선학원, 대각회 등과 사찰법인인 만불사, 능인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성륜불교문화재단 등 10여 곳이다. 선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당 법인들은 등록 준비가 한창이거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법인 등 나머지 법인은 올해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은 올해 말까지로 등록절차를 마치면 되는 만큼 아직 여유가 있다.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동행, 조계종출판사 등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종단법인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범어,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등 하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사찰출연법인,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사찰공동출연법인, 지구촌공생회 등 승려 개인 또는 복수의 승려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승려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종단은 물론 사찰, 스님이 설립한 모든 복지법인도 2차 등록시한인 올해 말까지 절차를 마치면 된다.

'조계종' 명칭 사용도 탄력적 운용

이와 더불어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을 제외한 법인은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종단 등록절차도 '신고 및 승인'으로 완화됐으며 법인 임원의 이사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의료법인 등 국가 법률에 의해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3분의1 이상 두어야 하는 경우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종단 소속 승려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행령 참고해 등록절차 준비해야

등록절차 역시 해당법인 특성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종단법인과 사찰출연법인은 등록대상이며, 그 외 나머지 법인은 신고대상이다. 등록대상은 종령에 따라 총무원에 등록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대상은 관할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총무원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총무원은 지난 8월27일 제31차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한 법인관리법 시행령을 관련 법인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향후 종단 등록 관련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행령은 목적, 법인적용, 기설립 및 신규설립법인 등록, 승려법인 신고, 사찰출연재산관리, 정관변경 승인절차, 해산 승인절차, 사찰출연법인 임원구성, 분담금 등 납부의무, 명칭 사용승인, 법인 현황보고, 행정지원 등 13개 조항과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시행령에 해당 법인들이 관련법에 맞춰 종단등록과 향후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세부내용을 담았다"면서 "더불어 총무원 총무부(02-2011-1709)로 직접 문의하면 성심껏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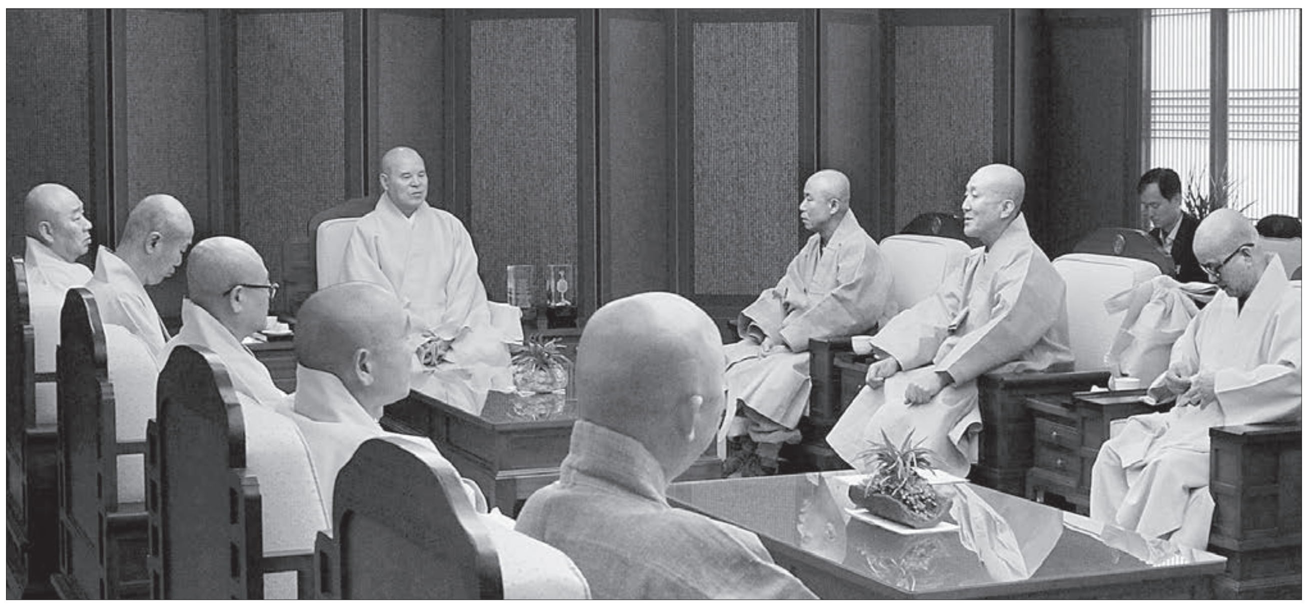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원각·정찬스님, 수좌복지회 이사장 의정스님 등 의장단의 예방을 받고 송담스님의 탈종선언과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법보선원 임원 자진 제적원 즉각 '반려'

총무원·관할 용주사

전국수좌회 임원들 "종단 버팀목 노력"

재단법인 법보선원 이사장 송담스님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 전원이 지난 19일 조계종 총무원과 재적본사인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 제적원을 제출했다.

이날 법보선원 감사인 허은강 변호사는 이사회 임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용주사 종무실과 총무원 총무부를 잇달아 방문해 제적원을 대리 접수했다. 제적원을 제출한 임원은 인천 용화선원 선원장이자 법보선원 이사장인 송담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환산스님, 이사 동해·상봉·서봉·성문·성조·인법·일상스님, 감사 인봉스님 등 10명이다.

이날 제적원을 제출받은 총무원과 용주사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용화선원에 반려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제적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재적본사의 소인이 있어야 하는데 소인이 없어 접수사유가 안 되는 만큼 접수가 반려됐다"면서 "용주사도 처리하지 않고 주지 성월스님이 직접 용화선원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송담스님은 서울 원각사에서 용화선원의 조계종 탈종을 선언하고, 상좌들에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탈종과 잔류를 결정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보선원 이사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 법인관리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하고, 이튿날 불교신문에 송담스님 등 제적원을 제출한 임원 전원이 서명한 '탈종공고문'를 보내왔다. 법보선원은 인천 용화선원을 비롯해 인제, 광주 등지에 분원을 둔 재단법인으로 법인관리법에 따라 사찰보유법인으로 분류돼 오는 30일까지 종단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송담스님의 탈종선언과 관련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원각·정찬스님, 수좌복지회 이사장 의정스님 등 의장단의 예방을 받고 용화선원장 송담스님이 앞으로도 종단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국수좌회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용주사 선거과정 속에서 승가답게 화합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보이셨고 그런 속에서 법인등록 등과 관련 상좌들 뜻에 따르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후학인 수좌들이 큰스님을 찾아뵙고 참회를 드리겠다. 큰스님께서 한국불교, 종단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문중으로는 조카 상좌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일본 조문 등으로 아직 찾아뵙지 못한 가운데 수좌 스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게 된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송담스님이 제적원을 제출한 19일 오전 송담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용화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담스님의 부재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상임이사 환산스님과 용화사 총무 상봉스님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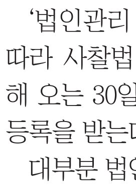

허정철 기자의 현장에서

hjc@ibulgyo.com

법인관리법 핵심은 '관리보다 지원'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에 한해 오는 30일까지 해당 법인의 종단 등록을 받는다.

대부분 법인들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분주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의 약칭인 '법인관리법'을 지적하며 "종단이 지원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만든 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기존 법인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이 법은 일부 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인에 대해 등록절차 등을 완화하고 법인의 종류를 세분화했다. 이는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고,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 하에 있음을 명기해야한다"는 종헌 9조 3항의 정신을 분명히 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전법에 맞는 법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법 전문 제1조 목적에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관리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선학원과의 내홍이 부각되면서 법인관리법이 마치 '선학원법'인 것처럼 사실이 호도돼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됐다. 종단도 모든 법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시간에 선학원과의 소모전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 다행히 현재 선학원 등을 제외한 해당 법인 대부분이 기한 내에 종단 등록을 약속하면서 1차 등록마감은 별다른 혼선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종단에서 시행령을 공포해 해당 법인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도 곳곳에서 법인 특성에 따른 등록시한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 절차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자칫 미등록 법인으로 분류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는 만큼 법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더불어 종단도 올해 말까지 2차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 법인들에 대한 관련 법 홍보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인관리법이 '관리'에 중점을 뒀다는 오해를 풀고,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인식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화엄경 강좌 모집
원조각성 대 강백 큰스님 직강

귀의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대 강백이신 원조각성 큰스님의 직강으로 그간 4년 동안 대반열반경을 마치고 다시 화엄경을 개설하였습니다.
〈화엄경〉은 화엄부의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앙형태에 영향을 끼친 경전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대승사상의 진수요 광대무변하게 우주에 편만해 계시는 붓다의 만덕(萬德)과 갖가지 꽃으로 장엄된 진리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성큰스님께서 생전에 마지막 화엄경 강의를 통해 후학들에게 전수한다는 마음으로 화엄사상의 핵심만 정리된 내용의 대 강좌입니다. 먼저 법성게 화엄일승법게도, 핵심적인 게송과 화엄경약찬게, 입법계품의 53선지식, 십지품 등 화엄경요지를 요약해 강설하십니다.

- 강의일시 : 2014년 10월 21일 첫 강의 셋째주 화요일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2층) 학명세미나실
- 수 강 료 : 1년 스님 70만원, 재가자 80만원
- 대 상 : 비구, 비구니, 재가자
- 구비서류 : 이력서
- 접수기간 : 2014년 10월 20일까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예금주 : 최재동)
- 전화문의 : 010-4242-7070 / 경남부산 전화문의 010-8563-9377 범철스님 / 사무장 010-5311-5150

주최 _ 동국대학교 정각원 원장 중화법타 합장 주관 _ 통화불교 전강원 경전연구회장 화영법경 합장

제5회 전국 청소년 등燈 작품 공모전

우수한 우리나라 전통등燈 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민족의 빛을 담는 그릇인 전통등燈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제 5회 전국 청소년 등燈 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출품 부문 및 절차

- **작품소재** : 전통행렬등燈 및 창작행렬등燈

※ 철사 및 골조를 이용하고 한지로 배접하여 채색하고 바닥에 초꽂이를 설치하여 불을 킬 수 있어야 하며, 등표(발원지)를 부착한 등燈이여야 함

- **작품주제** : 한국의 전통미와 예술성을 살린 등燈
- **작품규격** : 등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각 50cm 이내 / 등표(각자의 발원을 담은 종이) – 가로10cm · 세로20cm이내
- **출품자격** : 전국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성과 아이디어로 만든 순수 창작등

■ 접 수

- **기 간** : 2014년 10월 6일(월) ~ 10월 17일(금)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1층 로비 (문의 02–723–6165)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및 단체 일괄 접수
- **작품반출** : 11월 3일(월) ~ 5일(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대상부터 특선까지는 반출하지 않음.

■ 시 상

시상종류	시상훈격	시상인원	시상금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	상장 및 상금 50만원
금 상	동국대학교 총장상	2	상장 및 상금 30만원
은 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3	상장 및 상금 20만원
동 상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총재상	5	상장 및 상금 10만원

시상종류	시상훈격	시상인원	시상금
특 선	후원단체 기관장상	5	상장 및 상금 5만원
입 선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상	12	상장 및 상금 3만원
지도자표창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1	상장 및 상금 3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표창	2	상장 및 상금 20만원
단체상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상	1	상장 및 상금 50만원

Pāramitā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